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엄용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22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8.

발 의 자 : 엄용수 · 박명재 · 박덕흠
윤한홍 · 문진국 · 윤종필
이학재 · 백승주 · 성일종
홍일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,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.

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(안 제38조제6항 단서 신설).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